

제335회 임시회
2014. 10. 24.(금)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의회운영위원회

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이 숙 애 의원 외 6인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16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0월 24일

(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위원회 이 숙 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회의 교섭단체 간 창구 일원화로 도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그 밖에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을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함(안 제명)
- 충청북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규정함(안 제2조)
-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임 또는 교체선임 시,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 하도록 함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이홍신)

-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그 밖에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-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- . 안 제2조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하도록 하였고,
 - . 안 제10조에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선임은 교섭단체 소

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, 협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위 개정조례안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위임 규정은 없으나, 지방자치 고유 사무로 보아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.
- 다만, 안 제10조의 상임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조항은 상임위원장을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, 전국 최초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 하도록 개정하였음.
- 이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들의 상임위원장 선임 기회를 어렵게 하는 면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 의결

7. 소 수 의 견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”를 “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”를 “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,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.

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)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

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

③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의원 1명,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,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

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임과 교체선임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 <u>충청북도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</u>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<u>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,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~ 제5조 (생략)</p> <p>제6조(상임위원장)① (생략)</p> <p>② <u>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</u></p> <p>③ · ④(생략)</p> <p>제7조 · 제8조 (생략)</p> <p>제9조(위원의 선임과 교체 선임) ① <u>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출한다.</u></p> <p>② <u>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</u></p> <p>③ <u>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</u></p>	<p><u>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3조 ~ 제6조 (현행 제2조부터 제5조까지와 같음)</p> <p>제7조(상임위원장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② · ③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 <p>제8조 · 제9조 (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)</p> <p>제10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) ① <u>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원을 임기 중 교체 선임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.</u></p>	<p><u>선임한다. 다만,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</u></p> <p><u>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</u></p> <p><u>③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의원 1명,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,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</u></p> <p><u>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u>제10조</u> ~ <u>제13조</u> (생략)	<u>제11조</u> ~ <u>제14조</u> (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43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